

대출거래약정서 (가계용)



은행용

은행은 본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객번호 :

20 년 월 일

본인 (경 담보제공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담보제공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

본인 및 담보제공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힘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인합니다.

제 1 조 거래조건

- ① 대출과목, 대출(한도)금액,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율, 거래방식 등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V” 표시 합니다.)

대출과목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개별거래	<input type="checkbox"/> 유동성 한도거래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대출(한도)금액	금	원 (₩)		
대출기간 시작되는 날	20 년 월 일	대출기간 끝나는 날	20 년 월 일	
대출이자율 등	<input type="checkbox"/> 고정금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input type="checkbox"/> 변동금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끝나는 날까지 연 (%) % ※()	<input type="checkbox"/> 시장금리부변동여신: () + () %	금리변동 주기 () ※ 단, 금리 우대율은 제10조에서 정한 방법 및 주기에 따라 적용됩니다.
			<input type="checkbox"/> 신금리부변동여신: 수신금리 + () % <input type="checkbox"/> 단일금리부변동여신: 단일금리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위 금리는 제10조의 금리우대율 연()%가 적용된 금리입니다.
이자및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2.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의 대출이자율에 연체기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 이내로 적용합니다.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자율에 2%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3. 연체기산금리는 (%)를 적용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input type="checkbox"/> 중도상환대출금 × (%) ×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은 3년으로 신정하며 대출잔여일수는 3년에서 대출경과일수를 차감한 일수로 산정함.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대출실행방법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시작되는 날에 전액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년 ()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자급 요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끝나는 날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년 ()개월 동안 거치하고, ()년 ()월 ()일부터 매 ()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원금 <input type="checkbox"/> 원금과 이자)을 균등 분할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금 중 금 원은 대출기간 끝나는 날에 상환하며, 나머지 대출금액은 ()년 ()개월 동안 거치하고, ()년 ()월 ()일부터 매 ()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원금 <input type="checkbox"/> 원금과 이자)을 균등 분할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실행 후 매월 대출개시 해당일에 (<input type="checkbox"/> 원금 <input type="checkbox"/> 원금과 이자)을 분할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최종대출실행후 거치기간없이 ()년 ()월 ()일부터 매 ()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원금 <input type="checkbox"/> 원금과 이자)을 분할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자유로이 상환하되 대출기간 끝나는 날에 전액 상환합니다.		※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는 대출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 다음날부터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금, 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끝나는 날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첫째주 금요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셋째주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익일에 지급합니다.			
계좌번호	대출금 입금 계좌번호 :	자동이체 계좌번호 :		
대출기간 자동연기	대출기간이 끝날 때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연기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은행은 “기한연기 및 금리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이 정하는 단위로 상환기일의 연기 및 금리변경 처리하기로 하며, 은행은 연기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상환기일 등을 연기 후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대출이자납입일, 금리변동내역,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기일 안내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원함 <input type="checkbox"/> 원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모바일 통지서비스 <input type="checkbox"/> e-mail 통지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전고지예정일		<input type="checkbox"/> 5일전 <input type="checkbox"/> 10일전 <input type="checkbox"/> 15일전 <input type="checkbox"/> 20일전 <input type="checkbox"/> 1개월전
대출금미산정내역서 안내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원함 <input type="checkbox"/> 원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모바일 통지서비스 <input type="checkbox"/> e-mail 통지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휴대폰번호	e-mail	

- ‘원함’을 선택하신 경우 대출이자 납입일, 금리변동내역,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기일, 대출금리 산정내역서가 안내 됩니다.
- 등록된 휴대폰번호 또는 e-mail 주소가 신청하신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부주으로 인한 잘못된 휴대폰번호 또는 e-mail 주소로 대출관련정보가 통지되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자납입일 모바일 통지는 이자납입일과 사전에 고객님이 원하시는 날짜에 전송됩니다. (단, 유동상한도대출은 사전고지일에만 전송됩니다.)
- 금리변동내역 안내는 금리변동 당일 발송됩니다. (유동상한도대출은 결산일 다음 영업일에 발송됩니다.)

본인은 귀행의 대출 모바일/e-mail 통지서비스를 신청함에 있어 전자통지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 ② 대출만기일(분할상환금 상환일 포함) 또는 이자납입일 등이 은행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담당자	책임자	결재권자



제 2 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 ① 「고정금리여신」이란 당행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여신으로서 대출기간 끝나는 날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이란 시장기준금리 또는 고시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1.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의 시장기준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 및 금리 변경 적용일에 은행에서 고시하는 직전3영업일 평균 CD91일물,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의 유통수익률과 직전일의 전액기준 COFIX 금리, 신규취급기준 COFIX 금리, 신잔액기준 COFIX 금리 중 고객이 최초 취급할 때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시장기준금리의 변경은 아래의 변동 주기와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 (1) CD91일물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3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유통수익률 종기의 단순 평균값을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3개월마다 변경합니다.
 - (2)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6개월, 1년, 2년, 3년, 5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3영업일 KIS체관평가와 한국자산평가가 고시하는 기간별 금융채AAA 종가의 단순평균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6개월, 1년, 2년, 3년, 5년마다 변경합니다.
 - (3) 전액기준 COFIX 금리, 신규취급기준 COFIX 금리, 신잔액기준 COFIX 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6개월(또는 3개월, 1년)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최종 고시되어 있는 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6개월(또는 3개월, 1년)마다 변경합니다.
 2.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의 고시금리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종가의 직전3영업일 단순평균금리, KIS체관평가와 한국자산평가가 금융채AAA의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 종가의 직전3영업일 단순평균금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직전일 최종 전액기준 COFIX, 신규취급기준 COFIX 금리, 신잔액기준 COFIX 금리를 기준으로 1일부터 30년까지 기간별 금리에 자금비용을 감안하여 매일 산출하는 기간별 고시금리를 의미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해당 고시금리를 매일 해당잔액에 대하여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③ 「신기준금리부 변동여신」이란 은행에서 고시하는 (신)기준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하며, (신)기준금리란 은행의 평균조달원가에 적정비용과 마진, 업무원가 등을 더하여 산출되는 금리로서 은행에서 매일 고시되는 (신)기준금리가 변동되는 날에 대출이자율이 변동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④ 「단일금리부 변동여신」이란 당행 또는 자금대여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여신으로서 대출과목에 따라 약정기간 중 당행 또는 자금대여기관의 고시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를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⑤ 「수신금리부 변동여신」이란 고객의 예금·적금·부금 등 수신상품을 담보로 하는 여신으로서 담보로 제공된 수신상품의 수신금리가 변경된 경우 변경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제1조의 대출기간자동연기기에 따라 기한연기를 하는 경우에는 기한연기 시점에서 은행이 정한 SPREAD(가산금리)로 변경할 수 있기도 하며, 은행은 연기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상환기일 등을 연기 후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⑦ 채무자는 전 ⑥항에 의하여 통지된 이자율 등 변경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까지 변경전 이자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⑧ 전 ⑦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3 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예금·적금·부금 및 수익권담보대출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③ 대출기간 끝나는 날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중도상환해약금

- ①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약정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음)전에 상환할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에 대하여 제1조에서 정한 요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중도상환대출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도록 합니다.

1. 「중도상환대출금액」은 약정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으로 하며 분할상환대출인 경우 약정한 분할상환 기일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을 포함합니다.
2. 「잔여일수는 중도상환 다음날부터 당초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분할상환대출금의 경우에는 각 할부금별로 계산되며 분할상환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중도상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경과일수는 약정시작일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
 1. 대출금의 잔여일수가 3개월 미만인 경우
 2.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상실 등으로 은행이 약정기일 전에 대출을 회수하는 경우
 3. 은행의 필요에 의하여 약정기일 전에 예금 등과 상계하는 경우

제 5 조 가계유동성한도대출에 대한 약정

① 대출금 지급 및 상환방법 등

1.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유동성한도대출기본계좌(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며 지연배상금, 미수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2.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자금을 요구하거나 정기적 자급금 및 각종요금 등의 자동납부 요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해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는 것으로 합니다.
3.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대출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초과로 이자 등이 원금에 가산(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원금에 가산(지급)되지 않은 이자(이하 "미수이자"라 합니다.) 등은 한도초과된 다음 날부터 갚기로 하고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4. 미수이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자급을 지체한 때에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며, 그 때부터 대출금액에 대하여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가계당좌예금을 모계좌로 하는 대출특약

1.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유동성한도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채무자가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또는 기관)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지게 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
2.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유동성한도대출의 경우, 은행은 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대출기간 끝나는 날 전에 발행된 수표를 대출기간 끝나는 날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③ 대출(한도)금 사용제한

1. 은행은 채무자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가 채무를 갚아주는 행위)·대지급(채무자가 기일내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자금보증을 한 은행(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관정보,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출(한도)금액에 불구하고 대출(한도)금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자동이체 지급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은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3. 제1호에서 정한 사유가 해결되어 없어져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사용 제한을 해결하여 없애기로 합니다.

제 6 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 7 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 인도를 마쳤습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새로 씀·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와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 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단위: 원)

종 별		
증세(기)번호 또는 계좌번호		
명의인(또는 위탁자) 수의자		
예금잔액		
담보한도액 [Min(여신한도액×110%, 예금잔액×110%)]		
신규일자		
지급기일		

제 8 조 담보·보험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 또는 건축 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입 또는 건축한 해당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은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제 9 조 대출채권의 양도·신탁·승낙 및 피담보채권의 확정 특약 사항

- ① 본인은 은행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채권 유동화를 위해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전부 및 일부를 은행의 승계인 또는 수탁인 등 제3자에게 양도(신탁 포함) 가능함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해 채권 양수인이 본인에 대하여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기로 하되,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도통지를 실제로 받을 시점까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도 합니다.
- ② 본인은 제1항의 양도와 관련하여 본인에 대한 서면통지와 이에 대항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은행이 약정에 의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확정됨에 동의하며, 본인은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주가대출 등을 위하여 이 약정에 의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③ 본인은 제1항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 앞 채무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④ 본인은 제1항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출조건 변경이 제한된다는 점과 대출채권 등의 양도 일까지 후순위 대출이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은행이 채권양도통지 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통지를 서면으로 하여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양도 사실을 안경우에는 본인은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약정을 해지할 경우 양도의 사실을 안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은행에 알리기로 합니다.

제 10 조 금리우대 적용

- ① 제1조의 약정이자율은 대출 실행시 아래 선택 항목의 우대율이 적용되며, 이후에는 해당 항목의 조건이 충족되는 기준에 따라 재산정되어 우대율을 적용하기로 확인합니다.
※ 은행직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해당항목의 "□" 내에 "V" 표시하시고, 우대항목 및 우대율을 기입합니다.

구 분	우대율
금리우대 항목(I) □ 예금 관련 □ 정기예금, □ 적금, □ 연금신탁, □ 청약저축, □ 유동성예금 □ 기타 () 위 상품을 보유하고, □ 잔액, □ 평잔, □ 월불입액 () 만원 이상 유지	연 ()%
금리우대 항목(I) □ 금여이체 관련 □ 당행 본인계좌로 금여이체가 되고, 이체실적 1회 50만원 이상 확인 □ MyShop Care 추가 우대 기준 충족 □ 당행 본인계좌로 입금실적 1회 100만원 이상 확인(비대면 전용상품에 한함)	연 ()%

변동금리대출 금리상승위험, 상품설명서 및 대출금리 신장내역서 관련

- 변동금리 대출은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시장금리부변동금리, 단일금리부변동금리, 수신금리 및 가래실적에 따라 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경우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을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였습니다.
- 상품설명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 받았으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습니다.(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재정명법택1) : □ 직접교부(비대면 대출인 경우 화면확인), □ 모바일 통지서비스, □ e-mail 통지서비스)

구 分	우대율
금리우대 항목(I) □ 신용(또는 체크)카드 관련 □ 신한카드(신용/체크) 보유 □ 결제계좌가 당행인 신한카드 보유 □ 결제계좌가 당행인 신한카드(□신용/□체크) 보유하고, 최근 3개월(□신용/□체크) 이용실적()만원 이상	연 ()%
금리우대 항목(I) □ 전자금융 관련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등을 통해 이제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연 ()%
금리우대 항목(I) □ 공과금 또는 관리비 이체 □ 공과금 이체 □ 아파트(상가) 관리비 이체 ※ 본인 계좌 자동이체 등록건만 인정 ※ 납부일이 월말 공휴일로 인해 익월 이체된 경우 익월 실적으로 인정	연 ()%
금리우대 항목(I) □ 플랜형 통장 관련 주거우대 / 레이디 / 미래설계 / 김대리 / 캠퍼스 / S20통장 등 보유	연 ()%
금리우대 항목(II) □ 기타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 V V V V V	연 ()% 연 ()% 연 ()% 연 ()% 연 ()%

② 제1항의 금리우대 적용은 대출실행일(기한연장 또는 조건변경일 포함)에 금리우대제도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금리우대항목(I)에 의한 우대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간이며, 이후 1개월 단위로 금리우대 조건 이행 시 자동연장 됩니다. 만약, 매월 제1항의 금리우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대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되며, 금리인상 후 상기 조건을 재이행하는 경우에는 금리우대가 재적용됩니다. 인상된 금리변동내역은 제1조에서 신청한 대출 SMS/E-mail통지서비스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단, 대출 거래약정서 제1조 거래조건 대출이자율 등 항목에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 ④항 기준에 의해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구 分	금리우대 적용 기준
대출 실행 후 최초 3개월	실행시점 금리우대 적용
3개월 이후	대출 실행일이 1일~10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실적으로 이행여부 확인 (단, 최초 적용시는 최근 2개월로 이행여부 확인)
	대출 실행일이 11일~말일인 경우 전월말 기준 최근 3개월 실적으로 이행여부 확인

④ 금리우대항목(II)에 의한 우대는 다음 금리 재산정일(기한연장, 조건변경 등)까지로 하되, 다음 금리 재산정일에 금리우대 조건 충족여부를 재산정하여 금리를 우대하기로 합니다.

제 11 조 대출실행중단

은행은 대출계약 체결 후 대출실행 전에 치주에게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등급 하락 등 치주의 신용위험, 상환능력이 악화되거나 치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 겸 담보제공자	(인)		전화번호
담보제공자	(인)		전화번호

고객불만, 애로사항 상담
(소비자보호센터)

• 인터넷 : www.shinhan.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 우편 :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대경빌딩)

• 전화 : 080-023-0182

• 팩스 : 0505-177-0013

본인 및 자서 확인	소속	직위	성명	(인)
------------	----	----	----	-----



대출거래약정서 (가계용)



고객용

은행은 본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객번호 :

20 년 월 일

본인 (경 담보제공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

본인 및 담보제공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힘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인합니다.

제 1 조 거래조건

- ① 대출과목, 대출(한도)금액,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율, 거래방식 등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V” 표시 합니다.)

대출과목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개별거래	<input type="checkbox"/> 유동성 한도거래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대출(한도)금액	금	원 (₩)		
대출기간 시작되는 날	20 년 월 일	대출기간 끝나는 날	20 년 월 일	
대출이자율 등	<input type="checkbox"/> 고정금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끝나는 날까지 연 (%) % ※() <input type="checkbox"/> 변동금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input type="checkbox"/> 시장금리부변동여신: () + () % 금리변동 주기 () <input type="checkbox"/> 신금리부변동여신: 수신금리 + () % <input type="checkbox"/> 단일금리부변동여신: 단일금리 () % ※ 단, 금리 우대율은 제10조에서 정한 방법 및 주기에 따라 적용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위 금리는 제10조의 금리우대율 연() % 가 적용된 금리입니다.			
이자및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2.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의 대출이자율에 연체기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 % 이내로 적용합니다.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자율에 2%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3. 연체기산금리는 (%) %를 적용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input type="checkbox"/> 중도상환대출금 × (%) ×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은 3년으로 신정하며 대출잔여일수는 3년에서 대출경과일수를 차감한 일수로 신정함.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대출실행방법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시작되는 날에 전액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자급 요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년 ()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끝나는 날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자유로이 상환되며 대출기간 끝나는 날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년 ()개월 동안 거치하고, ()년 ()월 ()일부터 매 ()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원금 <input type="checkbox"/> 원금과 이자)을 균등 분할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금 중 금 원은 대출기간 끝나는 날에 상환하며, 나머지 대출금액은 ()년 ()개월 동안 거치하고, ()년 ()월 ()일부터 매 ()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원금 <input type="checkbox"/> 원금과 이자)을 균등 분할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실행 후 매월 대출개시 해당일에 (<input type="checkbox"/> 원금 <input type="checkbox"/> 원금과 이자)을 분할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최종대출실행후 거치기간없이 ()년 ()월 ()일부터 매 ()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원금 <input type="checkbox"/> 원금과 이자)을 분할 상환합니다. ※ 시장금리부변동 원금과 이자균등분할상환대출은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원금과 이자분할상환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는 대출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 다음날부터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금, 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끝나는 날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첫째주 금요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셋째주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익일에 지급합니다.			
계좌번호	대출금 입금 계좌번호 :	자동이체 계좌번호 :		
대출기간 자동연기	대출기간이 끝날 때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연기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은행은 “기한연기 및 금리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이 정하는 단위로 상환기일의 연기 및 금리변경 처리하기로 하며, 은행은 연기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상환기일 등을 연기 후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대출이자납입일, 금리변동내역,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기일 안내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원함 <input type="checkbox"/> 원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모바일 통지서비스 <input type="checkbox"/> e-mail 통지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전고지예정일		<input type="checkbox"/> 5일전 <input type="checkbox"/> 10일전 <input type="checkbox"/> 15일전 <input type="checkbox"/> 20일전 <input type="checkbox"/> 1개월전
대출금리산정내역서 안내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원함 <input type="checkbox"/> 원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모바일 통지서비스 <input type="checkbox"/> e-mail 통지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휴대폰번호	e-mail	

- ‘원함’을 선택하신 경우 대출이자 납입일, 금리변동내역,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기일, 대출금리 산정내역서가 안내 됩니다.
- 등록된 휴대폰번호 또는 e-mail 주소가 신청하신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부주으로 인한 잘못된 휴대폰번호 또는 e-mail 주소로 대출관련정보가 통지되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자납입일 모바일 통지는 이자납입일과 사전에 고객님이 원하시는 날짜에 전송됩니다.(단, 유동상한도대출은 사전고지일에만 전송됩니다.)
- 금리변동내역 안내는 금리변동 당일 발송됩니다.(유동상한도대출은 결산일 다음 영업일에 발송됩니다.)

본인은 귀행의 대출 모바일/e-mail 통지서비스를 신청함에 있어 전자통지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② 대출만기일(분할상환금 상환일 포함) 또는 이자납입일 등이 은행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제 2 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 ① 「고정금리여신」이란 당행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여신으로서 대출기간 끝나는 날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이란 시장기준금리 또는 고시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1.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의 시장기준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 및 금리 변경 적용일에 은행에서 고시하는 직전3영업일 평균 CD91일물,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의 유통수익률과 직전일의 전액기준 COFIX 금리, 신규취급기준 COFIX 금리, 신잔액기준 COFIX 금리 중 고객이 최초 취급할 때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시장기준금리의 변경은 아래의 변동 주기와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 (1) CD91일물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3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유통수익률 종기의 단순 평균값을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3개월마다 변경합니다.
 - (2)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6개월, 1년, 2년, 3년, 5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3영업일 KIS채권평가와 한국자산평가가 고시하는 기간별 금융채AAA 종가의 단순평균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6개월, 1년, 2년, 3년, 5년마다 변경합니다.
 - (3) 전액기준 COFIX 금리, 신규취급기준 COFIX 금리, 신잔액기준 COFIX 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6개월(또는 3개월, 1년)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최종 고시되어 있는 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6개월(또는 3개월, 1년)마다 변경합니다.
 2.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의 고시금리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종가의 직전3영업일 단순평균금리, KIS채권평가와 한국자산평가가 고시하는 금융채AAA의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 종가의 직전3영업일 단순평균금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직전일 최종 전액기준 COFIX, 신규취급기준 COFIX 금리, 신잔액기준 COFIX 금리를 기준으로 1일부터 30년까지 기간별 금리에 자금비용을 감안하여 매일 산출하는 기간별 고시금리를 의미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해당 고시금리를 매일 해당잔액에 대하여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③ 「신기준금리부 변동여신」이란 은행에서 고시하는 (신)기준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하며, (신)기준금리란 은행의 평균조달원가에 적정비용과 마진, 업무원가 등을 더하여 산출되는 금리로서 은행에서 매일 고시되는 (신)기준금리가 변동되는 날에 대출이자율이 변동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④ 「단일금리부 변동여신」이란 당행 또는 자금대여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여신으로서 대출과목에 따라 약정기간 중 당행 또는 자금대여기관의 고시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를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⑤ 「수신금리부 변동여신」이란 고객의 예금·적금·부금 등 수신상품을 담보로 하는 여신으로서 담보로 제공된 수신상품의 수신금리가 변경된 경우 변경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제1조의 대출기간자동연기기에 따라 기한연기를 하는 경우에는 기한연기 시점에서 은행이 정한 SPREAD(가산금리)로 변경할 수 있기도 하며, 은행은 연기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상환기일 등을 연기 후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⑦ 채무자는 전 ⑥항에 의하여 통지된 이자율 등 변경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까지 변경전 이자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 자연배상금률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⑧ 전 ⑦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3 조 자연배상금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자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예금·적금·부금 및 수익권담보대출은 자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③ 대출기간 끝나는 날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자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중도상환해약금

- ①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약정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음)전에 상환할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에 대하여 제1조에서 정한 요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중도상환대출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도록 합니다.

1. 「중도상환대출금액」은 약정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으로 하며 분할상환대출인 경우 약정한 분할상환 기일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을 포함합니다.
2. 「잔여일수」는 중도상환 다음날부터 당초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분할상환대출금의 경우에는 각 할부금별로 계산되며 분할상환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중도상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경과일수」는 약정시작일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
 1. 대출금의 잔여일수가 3개월 미만인 경우
 2.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상실 등으로 은행이 약정기일 전에 대출을 회수하는 경우
 3. 은행의 필요에 의하여 약정기일 전에 예금 등과 상계하는 경우

제 5 조 가계유동성한도대출에 대한 약정

① 대출금 지급 및 상환방법 등

1.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유동성한도대출기본계좌(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며 지연배상금, 미수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2.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자금을 요구하거나 정기적 자급금 및 각종요금 등의 자동납부 요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해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대출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초과로 이자 등이 원금에 가산(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원금에 가산(지급)되지 않은 이자(이하 “미수이자”라 합니다.) 등은 한도초과된 다음 날부터 갚기로 하고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4. 미수이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자급을 지체한 때에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며, 그 때부터 대출금액에 대하여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가계당좌예금을 모계좌로 하는 대출특약

1.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유동성한도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채무자가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또는 기관)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지게 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
2.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유동성한도대출의 경우, 은행은 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대출기간 끝나는 날 전에 발행된 수표를 대출기간 끝나는 날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③ 대출(한도)금 사용제한

1. 은행은 채무자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가 채무를 갚아주는 행위)·대지급(채무자가 기일내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자금보증을 한 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제정보,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출(한도)금액에 불구하고 대출(한도)금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자동이체 지급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은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설을 본인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3. 제1호에서 정한 사유가 해결되어 없어져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사용 제한을 해결하여 없애기로 합니다.

제 6 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 7 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 인도를 마쳤습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새로 쓴·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와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 연장되거나 연체로 밀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단위: 원)

증 별		
증서(기)번호 또는 계좌번호		
명의인(또는 위탁자) 수지자		
예금잔액		
담보한도액 [Min(여신한도액×110%, 예금잔액×110%)]		
신규일자		
지급기일		

제 8 조 담보·보험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 또는 건축 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입 또는 건축한 해당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은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제 9 조 대출채권의 양도·신탁·승낙 및 피담보채권의 확정 특약 사항

- ① 본인은 은행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채권 유동화를 위해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전부 및 일부를 은행의 승계인 또는 수탁인 등 제3자에게 양도(신탁 포함) 가능함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해 채권 양수인이 본인에 대하여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기로 하되,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도통지를 실제로 받을 시점까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를 합니다.
- ② 본인은 제1항의 양도와 관련하여 본인에 대한 서면통지와 이에 대항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은행이 약정에 의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확정됨에 동의하며, 본인은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주가대출 등을 위하여 이 약정에 의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③ 본인은 제1항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 앞 채무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④ 본인은 제1항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출조건 변경에 제한된다는 점과 대출채권 등의 양도 일까지 후순위 대출이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은행이 채권양도통지 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통지를 서면으로 하여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양도 사실을 안경우에는 본인은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약정을 해지할 경우 양도의 사실을 안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은행에 알리기로 합니다.

제 10 조 금리우대 적용

- ① 제1조의 약정이자율은 대출 실행시 아래 선택 항목의 우대율이 적용되며, 이후에는 해당 항목의 조건이 충족되는 기준에 따라 재산정되어 우대율을 적용하기로 확인합니다.
※ 은행직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해당항목의 "□" 내에 "V" 표시하시고, 우대항목 및 우대율을 기입합니다.

구 分	우대율
금리우대 항목(I) □ 예금 관련 □ 정기예금, □ 적금, □ 연금신탁, □ 청약저축, □ 유동성예금 □ 기타 () 위 상품을 보유하고, □ 잔액, □ 평잔, □ 월별입액 () 만원 이상 유지	연 ()%
금리우대 항목(I) □ 금여이체 관련 □ 당행 본인계좌로 금여이체가 되고, 이체실적 1회 50만원 이상 확인 □ MyShop Care 추가 우대 기준 충족 □ 당행 본인계좌로 입금실적 1회 100만원 이상 확인(비대면 전용상품에 한함)	연 ()%

변동금리대출 금리상승위험, 상품설명서 및 대출금리 신장내역서 관련

- 변동금리 대출은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시장금리부변동금리, 단일금리부변동금리, 수신금리 및 가래실적에 따라 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경우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을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였습니다.
- 상품설명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 받았으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습니다.(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재정명법택1) : □ 직접교부(비대면 대출인 경우 화면확인), □ 모바일 통지서비스, □ e-mail 통지서비스)

구 分	우대율
금리우대 항목(I) □ 신용(또는 체크)카드 관련 □ 신한카드(신용/체크) 보유 □ 결제계좌가 당행인 신한카드 보유 □ 결제계좌가 당행인 신한카드(□신용/□체크) 보유하고, 최근 3개월(□신용/□체크) 이용실적()만원 이상	연 ()%
금리우대 항목(I) □ 전자금융 관련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등을 통해 이제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연 ()%
금리우대 항목(I) □ 공과금 또는 관리비 이체 □ 공과금 이체 □ 아파트(상가) 관리비 이체 ※ 본인 계좌 자동이체 등록건만 인정 ※ 납부일이 월말 공휴일로 인해 익월 이체된 경우 익월 실적으로 인정	연 ()%
금리우대 항목(I) □ 플랜형 통장 관련 주거우대 / 레이디 / 미래설계 / 김대리 / 캠퍼스 / S20통장 등 보유	연 ()%
금리우대 항목(II) □ 기타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 V V V V V	연 ()% 연 ()% 연 ()% 연 ()% 연 ()%

② 제1항의 금리우대 적용은 대출실행일(기한연장 또는 조건변경일 포함)에 금리우대제도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금리우대항목(I)에 의한 우대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간이며, 이후 1개월 단위로 금리우대 조건 이행 시 자동연장 됩니다. 만약, 매월 제1항의 금리우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대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되며, 금리인상 후 상기 조건을 재이행하는 경우에는 금리우대가 재적용됩니다. 인상된 금리변동내역은 제1조에서 신청한 대출 SMS/E-mail통지서비스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단, 대출 거래약정서 제1조 거래조건 대출이자율 등 항목에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 ④항 기준에 의해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구 分	금리우대 적용 기준
대출 실행 후 최초 3개월	실행시점 금리우대 적용
3개월 이후	대출 실행일이 1일~10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실적으로 이행여부 확인 (단, 최초 적용시는 최근 2개월로 이행여부 확인)
	대출 실행일이 11일~말일인 경우 전월말 기준 최근 3개월 실적으로 이행여부 확인

④ 금리우대항목(II)에 의한 우대는 다음 금리 재산정일(기한연장, 조건변경 등)까지로 하되, 다음 금리 재산정일에 금리우대 조건 충족여부를 재산정하여 금리를 우대하기로 합니다.

제 11 조 대출실행중단

은행은 대출계약 체결 후 대출실행 전에 치주에게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등급 하락 등 치주의 신용위험, 상환능력이 악화되거나 치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 겸 담보제공자	(인)		전화번호
담보제공자	(인)		전화번호

고객불만, 애로사항 상담
(소비자보호센터)

• 인터넷 : www.shinhan.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 우편 :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대경빌딩)

• 전화 : 080-023-0182

• 팩스 : 0505-177-0013

본인 및 자서 확인	소속	직위	성명	(인)
------------	----	----	----	-----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 · 이용 및 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 · 이용 및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자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권

가. 고객은 가입신청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귀사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행]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만,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단서).

* [(금융)거래] 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 단서)

나.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 www.shinhan.com
 - 전화접수 : 1544-8000
 - 서면접수 : 당행 전 영업점

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행]의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당행] 고객 정보관리 · 보호인/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 1544-8000
 - 은행연합회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 민원상담실 1544-1040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 민원실(국번없이) 1332

3.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 정정 · 삭제 요구권

가. 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행] 홈페이지([www.shinhan.com])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행] 각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 삭제 요구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당행]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 또는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자,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한 신용정보의 주요 내용, 제공받은 자, 이용 목적 등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マイ크レ딧, 크레딧뱅크,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레딧 : 02) 1588-2486 / www.mycredit.co.kr
- 크레딧뱅크 : 02) 3771-1004 / www.creditbank.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02) 846-5000 / www.siren24.com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2) 708-1000 / www.kcb4u.com

4.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신한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가계용)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 금융 매체에 비치·제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주택자금 기타의 가계자금대출과 이에 준하는 가계부업자금대출, 자금보증 등의 가계용 여신에 관련된 은행과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 2 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자주, 지급보증신청인 등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발행·배서되어음 뒷면에 어음 양도, 보증 등 어음거래의 취지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는 일)을 하는 행위·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 ① 이자·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유통·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이자 등의 유통은 거래계약할 때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유통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유통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일로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있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유통을 인상·인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결되어 없어진 때에는 은행은 해결되어 없어진 상황에 일치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유통에 관한 은행의 인상·인하는 전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⑤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끝,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유통,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협약되는 한도 내에서 유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 ⑥ 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협약되는 한도내외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그 변경 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사항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 ⑨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유통과 관련하여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당사자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 등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물건의 가치 범위内外에서만 채무 변제의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은행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 [기압류 또는 가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부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로부터 더 깊은 날까지의 날짜 수만큼, 산법 제54조 (상시법정이자율)에 의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 ③ 은행은 대출악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정이자·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약정이자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와 성격이 유사한 수수료 등을 합산한 실질유효금리를 산정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4 조의 2 대출계약 철회

- ① 채무자는 계약서류를 발급 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 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서면·전화·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등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

③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균저당권설정계약에서 제8조 제4항 및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 ④ 은행은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 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 ⑤ 은행은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⑥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⑦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철회기한 내에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철회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할 때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6 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산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채무자)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또는 기관에게 부담하는 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 모든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기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될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척수 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기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시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자산(제1호의 모든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척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회생·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
6.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 ②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해당채무의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시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또는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 ③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서면으로 변제·압류 등의 해결하여 없앰,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한 날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은행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기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신용정보관리구역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가 채무를 갚아주는 행위)·대지급(채무자가 기일내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지급보증을 한 은행(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 ④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한 날짜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해 해당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시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해당주택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례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은행이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금과 이자·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 위 7조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

제 8 조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상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 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이 상실될 때, 은행은 제1호·제4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제3호·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은행이 인지한 날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④ 제7조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은행으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챈권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챈권이하 “제 예치금 등”이라 합니다)과를 상계할 경우, 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거나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제 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유통은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예금 등의 이자율은 해당 예금 등을 기입할 때 은행과 약정한 이자율로 합니다.

제 11 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 한 예금 기타의 챈권과 은행에 대한 챈무와를, 그 챈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계한 예금 기타 챈권의 증서·통장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지체 없이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채무자의 상계통지가 은행에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유통은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어음의 제시·교부

- ① 어음이 따른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상계와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 ②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접수하고 추심 또는 청문한 후, 그 대금으로,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일부변제·일부상계와 충당

- ①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챈무전액을 없애 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챈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챈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챈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합니다.
-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챈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모든 예치금으로 챈무자의 챈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챈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챈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챈무를 제쳐놓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챈무에, 또는 무담보 챈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챈무에 충당하는 등 은행의 챈권보전상 지정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은행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챈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챈무자가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챈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챈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챈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챈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한 챈무자의 지정은 은행의 챈권보전상 지정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은행은 자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챈권보전상 알맞다고 인정되는 챈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시고의 처리

- ① 챈무자가 발행·배서(어음 뒷면에 어음 양도, 보증 등 어음거래의 취지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는 일)을 하는 행위 등을 한 어음 또는 챈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모든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늦게 도착한 경우 챈무자는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챈무를 갚기로 하되, 챈무자가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챈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챈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 ② 챈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은행의 요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 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벼지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챈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이 어음이나 모든 증서·신고서 등 서류의 도장을 찍은 모양·서명을, 챈무자가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를 말미암은 손해는 챈무자가 부담합니다.

제 15 조 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주소·전화번호·인감·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자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통지의 효력

- ① 은행이 챈무자로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편배달기간이 완전히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② 챈무자가 제15조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라 변경신고를 제출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챈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편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챈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 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은행이 챈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정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 18 조 회보(문의에 대한 답을 알려줌)와 조사

① 챈무자는 은행이 챈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챈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의에 대한 답을 알려주며, 또 은행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챈무자는 챈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요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이행장소·준거법

- ① 챈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챈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관할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 ② 챈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 20 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챈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챈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챈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챈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챈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챈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챈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챈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타인의 챈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물건의 가치 범위액 내에서 만 챈무 변제의 의무가 있는 사람)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챈무자의 책임임을 이유로 무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챈무의 권리와 관하여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챈권관리업무의 관할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변경된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